

임실군 의회 공고 2026 - 8호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4일

임실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임실군 재향경우회의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치안 협력 등 공익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임실군 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임실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 소재지에 설치된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